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59 호

2007년 6월 22일 금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2007-690호(인천광역시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56호(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수동 80, 109, 110번지 일원) 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60호(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23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34호(인천도시관리계획(도림구역 제1종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림동 249번지 일원)) 25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35호(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 공고(장미연립 재건축정비사업)) 30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07-3호(인천광역시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31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공고 제2007-4호(2006회계년도 결산 공고) 32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6 월 22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윤 태 진

남동구 규칙 제 69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 분	채 용 인 원	선 발 시 험		자 격 기 준
		1차	2차	
계	5			
소 장	1	서류전형	면 접	○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급운영 요 원	2	서류전형	면 접	○ 공무원 7급 상당 이상 재직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8급운영 요 원	2	서류전형	면 접	○ 행정사무보조 일용직 근무 3년 이상인자, 고용직, 기능직, 별정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을 소지한 자

제 정 이 유

☐ 제정이유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자격요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56 호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관보 제14336호'99.10.22)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제2007-1호 '07.1.10)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년 06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지구의 명칭 : 인천 남동구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 109, 110번지 일원
- 면 적 : 203,170.6㎡

나.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1년 8월 ~ 2010년 12월 31일

다.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전면개량지역 : 대한주택공사장
- 현지개량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단, 주택개량은 주민)

2.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

가. 주택개량방식 (변경없음)

○ 혼합형개량방식 (전면개량방식 + 일부 현지개량방식)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총 계	주 거 용 지			도시기반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공동주택 용 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현지개량 용 지	동사무소 용 지	파출소 용 지	도로 용지	어린이 공원 소공원	주차장	종교 용지	유지원 용 지	사외복지 시 설
기 정	207,115	174,692	5,864	4,092	1,095	452	15,237	1,425	1,216	1,906	586	550
	100.0%	84.3	2.8	2.0	0.5	0.2	7.4	0.7	0.6	0.9	0.3	0.3
변 경	203,170.6	169,601.7	5,559.3	4,808.8	1,006.0	478.9	16,397	1,121.0	1,172.5	1,900.2	555.2	540.0
	100.0%	83.5	2.7	2.4	0.5	0.2	8.1	0.5	0.6	0.9	0.3	0.3

다. 공동주택건설계획 (변경없음)

1) 건축규모

구 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 수(층)	비 고
공동주택 (①-1)	147,618.0	30% 이하	기준용적률 : 250% 이하	1~25	
			허용용적률 : 250% 이하		

주) 공동주택건설계획에 관한 사항은 ①-1(도면위치)에 한하며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조건에 의해 변경되는 사항은 공동주택건설계획이 변경결정된 것으로 봄

2) 주택공급건설계획

구 분	총 계	114㎡	84㎡	75㎡	74㎡	59㎡	46㎡	비 고
소 계	3,208	242	1,477	-	224	858	407	100.0%
임 대	671	-	-	-	-	264	407	20.9%
분 양	2,537	242	1,477	-	224	594	-	79.1%

라. 구역지정 결정 (변경없음)

○ 구역지정결정 조서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	향촌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 109, 110번지 일원	203,170.6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 109, 110번지 일원	203,170.6	

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없음)

○ 용도지역결정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우		
주거 지역	소 계	207,115	-	207,115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33,568.9	-	33,568.9	16.2	
	제3종 일반주거지역	169,601.7	-	169,601.7	81.9	
	준주거지역	3,944.4	-	3,944.4	1.9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11	1,028	16,337	1	469	12,277.5	0	0	0	10	559	41,195
중로	3	649	14,355	1	469	12,277.5	-	-	-	2	180	1,988
소로	8	379	2,131.5	-	-	-	-	-	-	8	379	2,131.5

※ 도로연장 및 면적은 구역 내의 도로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도로번호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소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80	20~29.8	집산 도로	840 (469)	대1-14	중1-62	일반 도로		'01.10.29	
기정	중로	3	363	12	국지 도로	96 (96)	향촌지구계 (만수동74-25)	중1-180	일반 도로		'05.11.10	
기정	소로	2	10	9~125	국지 도로	1,448	중1-180	소2-16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84 (84)	중1-180	향촌지구계 (만수동 109-18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332	만수동 989-2	중3-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138 (60)	중1-62	중1-18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60 (21)	중1-62	중1-18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5	6	국지 도로	60 (60)	소3-16	중1-18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337 (95)	중1-180	중3-363	일반 도로		'01.10.8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47 (47)	소3-16	중1-18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15	소2-18	소2-225	일반 도로		'07.1.10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22 (22)	소3-16	만수동 80-112	일반 도로		'07.1.10	

※ ()는 구역 내 도로의 연장임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 소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우		
기 정	⑧	주차장	노 외 주차장	만수동 80-105번지 일원	1,172.5	-	1,172.5	'05.11.10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 조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우		
기 정	⑦	공 원	소공원	만수동 80-76번지 일원	1,121.0	-	1,121.0	'01.10.08	시설의 세분 변경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우	
기 정	2-1	공공청사	동사무소	만수동 80-282번지 일원	1,006.0	-	1,006.0	
기 정	2-2	공공청사	파출소	만수동 80-701번지 일원	478.9	-	478.9	

아.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조성 계획

가) 계획방향

■ 가구계획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적정 가구규모의 확보 및
인접 가구규모와의 상호 연계를 고려한 적정 가구규모 설정

■ 획지계획

- 개발용도, 필지형태, 토지소유자, 소규모 필지 등 현황과약을 토대로
획지계획 수립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기 정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위치	면적(㎡)	
-	①	169,601.7	1	147,618.0	공동주택용지
			2	21,983.7	
-	②	1,484.9	1	1,006.0	동사무소
			2	478.9	파 출 소
-	③	1,930.2	1	1,400.1	종교용지 (종교집회장내 선교유치원 허용)
			2	530.1	
-	④	5,559.3	1	567.0	근린생활시설용지
			2	1,265.1	
			3	1,265.0	
			4	1,202.9	
			5	1,259.3	
-	⑤	555.2	-	555.2	유치원용지 (영·유아보육시설 포함)
-	⑥	540.0	-	540.0	사회복지시설용지 (1개 층에 한하여 종교집회장 허용)
-	⑦	1,121.0	-	1,121.0	소 공 원
	⑧	1,172.5	-	1,172.5	주 차 장
-	⑨	4,808.8	1	877.6	현지개량지역
			2	618.2	
			3	1,342.9	
			4	703.1	
			5	859.1	
			6	407.9	

3) 향촌지구 주 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서

연번	지 번	소유자	정형화 계획(㎡)	비 고
			기 정	
1	1-2BL	남동구	21,983.7	공동주택용지
2	2-1BL	남동구	1006.0	동사무소용지
3	2-2BL	남동구	478.9	파출소용지
4	3-1BL	남동구	1,400.1	종교용지 1
5	3-2BL	남동구	530.1	종교용지 2
6	4-2BL	남동구	1,265.1	근생용지 2
7	4-3BL	남동구	1,265.0	근생용지 3
8	4-4BL	남동구	1,202.9	근생용지 4
9	4-5BL	남동구	1,259.3	근생용지 5
10	5BL	남동구	555.2	유치원용지
11	6BL	남동구	540.0	사회복지시설용지
12	7BL	남동구	1,121.0	소공원용지
13	8BL	남동구	1,172.5	주차장용지

연번	지 번	소유자	정형화 계획(㎡)	비 고
			기 정	
14	9-1BL 1LOT	은계자	877.6	현지개량용지
15	9-2BL 1LOT	김영옥 외2인	87.8	현지개량용지
16	9-2BL 2LOT	황장아 외1인	216.2	현지개량용지
17	9-2BL 3LOT	박광철 외1인	203.0	현지개량용지
18	9-2BL 4LOT	최정행 외1인	199.0	현지개량용지
19	9-3BL 1LOT	최정행 외1인	228.5	현지개량용지
20	9-3BL 2LOT	최정행	311.0	현지개량용지 최정행 단독소유
21	9-3BL 3LOT	신현광 외1인	274.6	현지개량용지
22	9-3BL 4LOT	황경주 외2인	221.1	현지개량용지
23	9-3BL 5LOT	정찬호 외1인	181.7	현지개량용지
24	9-3BL 6LOT	김영환 외1인	126.0	현지개량용지
25	9-4BL 1LOT	원희숙 외1인	174.6	현지개량용지
26	9-4BL 2LOT	조인호 외1인	82.2	현지개량용지
27	9-4BL 3LOT	박용구 외1인	194.6	현지개량용지
28	9-4BL 4LOT	송용섭 외1인	156.5	현지개량용지
29	9-4BL 5LOT	지태완 외1인	95.2	현지개량용지
30	9-5BL 1LOT	주경희 외1인	77.5	현지개량용지
31	9-5BL 2LOT	변인만 외1인	87.5	현지개량용지
32	9-5BL 3LOT	한정남 외2인	174.2	현지개량용지
33	9-5BL 4LOT	장동연 외1인	132.0	현지개량용지
34	9-5BL 5LOT	이규섭 외2인	102.7	현지개량용지
35	9-5BL 6LOT	신원호 외1인	84.5	현지개량용지
36	9-5BL 7LOT	홍재남 외1인	104.0	현지개량용지
37	9-5BL 8LOT	국종일 외1인	96.7	현지개량용지
38	9-6BL 1LOT	박명란 외1인	164.4	현지개량용지
39	9-6BL 2LOT	박귀병 외1인	127.8	현지개량용지
40	9-6BL 3LOT	조경숙 외1인	87.4	현지개량용지
41	9-6BL 4LOT	남동구	28.3	현지개량용지 남동구 단독소유

자.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공동주택용지(1)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① (1-1)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공동주택 부대시설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50% 이하 / 허용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25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2) 공동주택용지(2)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① (1-2)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공동주택 부대시설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20% 이하 / 허용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25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소로 2-312호선변 : 2m

3) 공공청사용지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	②	용 도	· 지정용도 : 동사무소(2-1), 파출소(2-2)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5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소로 3-13호선변 : 1m · 소로 3-17호선변 : 1m
변 경	-	②	용 도	· 지정용도 : 동사무소(2-1), 파출소(2-2)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소로 3-13호선변 : 1m · 소로 3-17호선변 : 1m

4) 종교용지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	③	용 도	·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 내 선교유치원 허용)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5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중로 3-1호선변 : 1m
변 경	-	③	용 도	·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 내 선교유치원 허용)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중로 3-1호선변 : 1m

5) 근린생활시설용지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	④	용 도	· 지정용도 : 근린생활시설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5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중로 3-1호선변 : 1m · 소로 3-13호선변 : 1m · 소로 3-15호선변 : 1m
변 경	-	④	용 도	· 지정용도 : 근린생활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중로 3-1호선변 : 1m · 소로 3-13호선변 : 1m · 소로 3-15호선변 : 1m

6) 유치원용지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	⑤	용 도	· 지정용도 :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 포함)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5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소로 3-14호선변 : 1m
변 경	-	⑤	용 도	· 지정용도 :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 포함)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소로 3-14호선변 : 1m

7) 사회복지시설용지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	⑥	용 도	· 지정용도 : 사회복지시설 (1개층에 한하여 종교집회장 허용)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5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소로 3-17호선변 : 1m
변 경		⑥	용 도	· 지정용도 : 사회복지시설 (1개층에 한하여 종교집회장 허용)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소로 3-17호선변 : 1m

8) 현지개량지역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	⑨	용 도	· 지정용도 : 불허용도를 제외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아파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관련시설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공장 -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제조업 수리점 등 - 학교보건법에 정하는 절대정화구역안에 금지하는 업종 -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시한 청소년 유해업소
			건폐율	·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제8조에 의한 건폐율 적용 단, 건축선(1m)에 접한 필지는 건폐율 인센티브 적용 (5% 이하)
			용적률	·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제10조에 의한 용적률 적용
			높 이	·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제11조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중로 3-1호선변 : 1m · 소로 3-13호선변 : 1m · 소로 3-14호선변 : 1m · 소로 3-15호선변 : 1m · 소로 3-17호선변 : 1m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변 경		⑨	용 도	· 지정용도 : 불허용도를 제외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도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아파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식물관련시설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공장 -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제조업 수리점 등 - 학교보건법에 정하는 절대정화구역안에 금지하는 업종 -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시한 청소년 유해업소
			건폐율	· 80% 이하 : 연면적 60㎡ 이하 건축물 · 70% 이하 : 연면적 60㎡ 초과 및 85㎡ 이하 건축물 · 60% 이하 : 연면적 85㎡ 초과 건축물 (단, 건축선(1m)에 접한 필지는 건폐율 인센티브(5% 이하) 적용)
			용적률	· 300% 이하 (단, 연면적 200㎡이하 건축물 및 연면적 60㎡이하 단독주택에 한하여 350% 적용)
			높 이	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거리의 2.5배 이하 나.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함(너비 8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외) - 높이 4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 높이 8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 높이 8m 초과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4 이상 ※ “가”, “나”의 기준은 연면적 200㎡이하 건축물 및 연면적170㎡ 이하 단독주택에 한함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중로 3-1호선변 : 1m · 소로 3-13호선변 : 1m · 소로 3-14호선변 : 1m · 소로 3-15호선변 : 1m · 소로 3-17호선변 : 1m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규정의 1/2 이상 설치 (단, 단독주택 및 연면적 200㎡이하 건축물에 한함)

▶ 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변 경 사 유
변경		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07.05.14:조례 제4007호) 부칙 제5조 규정(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범위 구체화 적용

차.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1) 경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 건축물은 층수를 25층 이하로 규제하고 동별로 층수를 다양화하여 시각적 개방감 확보 유도 · 비휴먼스케일의 건축물군이 생기지 않도록 건축물의 경관 계획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 형성 유도	· 고층화 / 초고층화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중로 1-180호선변 획지	·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하고 가로변의 미관을 고려한 건축 계획 유도 · 보행기능의 강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배후 주거지의 서비스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상업가로의 조성	· 중층화

2)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	공동주택 획지 내 보행 및 차량동선	· 최소폭원 3m 이상으로 계획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 단지 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 단지 내 진입도로와 외곽도로는 T자형 교차를 원칙으로함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대지의 구간 · 공동주택용지의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중로 1-180호선 도로변 · 단독주택지와 인접한 공동주택용지 획지변	
	차량출입 허용구간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의 구간 및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의 구간 단)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의 구간 중 도로의 교차로,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을 불허함	

3)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	중로 1-180호선변, 소로 2-312호선변	• 전면공지 (보도부속형) : 중로 1-180호선변 및 소로 2-312호선변	• 중로 1-180호선변 : 2m 건축한계선 지정 • 소로 2-312호선변 : 2m 건축한계선 지정
	중로 3-1호선변, 소로 3-13, 3-14, 3-15, 3-17호선변	• 전면공지 (보도부속형) : 중로 3-1호선, 소로 3-13, 3-14, 3-15, 3-17호선변	• 대지경계선에서 1m 이격 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별표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제어요소	제 어 지 침	제어구역
주동배치	• 남향위주로 배치하되 가로망에 평행하거나 직교하게 하여 전체배치에 질서감을 부여 •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적정배치하고, 변화 있는 층고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형태를 다양화하여 배치	• 공동주택용지
	• 부지의 효율성및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적절하게 배치	•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구역 전체
건축한계선	• 정연한 가로경관의 확보 및 보도 확폭	• 중로 1-180호선변 : 폭 2m • 소로 2-312호선변 : 폭 2m • 중로 3-1호선변 : 폭 1m • 소로 3-13호선변 : 폭 1m • 소로 3-14호선변 : 폭 1m • 소로 3-15호선변 : 폭 1m • 소로 3-17호선변 : 폭 1m

【별표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계획

제어요소	제 어 지 침	제 어 구 역
외 장	· 색채 - 건축물 외벽색채의 기조는 품격 있고 친환경적인 색조로 유도함 · 형태 / 재료 -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질이 높은 것으로 함	· 구역전체
건축물 형 태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구역 전체
조 명	· 기존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의 증진을 위해 건축계획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조명설치 유도 ·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등 설치권장	· 가로변 및 보행통로 주변
건축설비	·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건축물 안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주변 경관에 배려하도록 함 · 가로변에 조성되는 건축물의 설비시설은 조경 등으로 차폐하여 시각적 위압감 완화	· 구역전체
캐노피 / 차양막	· 보도 및 보행가랑와 접하는 건축물에 설치 권장 · 최저높이 3.5m 이상, 최고 돌출길이 3m 이하	· 중1-180호선변
경사지붕	· 주거환경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조성 권장 · 간선가로변 건축물은 가로경관이나 옥상경관의 향상을 위해 평지붕의 설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박공지붕이나 모임지붕 등을 권장	· 공동주택
벽면처리의 통일성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중1-180호선변
개구부가 없는 벽면처리	· 폭 20m 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지 않음	· 중1-180호선변
간판 및 광고물	· 건축물에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는 가능한 1층 출입구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가로의 미관을 보호 · 경사지붕에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	· 구역전체
1층부 형태	· 쇼윈도 - 상업가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쇼윈도 등의 설치 · 투시형 셔터 / 투시벽 - 1층 전면용도와 가로활동과의 연속성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그래픽 셔터 등을 사용	· 중1-180호선변

3. **관계도서** : 게재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5.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7일간
6. **공람장소** :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 032-453-2962) 만수2동 사무소 (☎ 032-453-5400)
 , 만수3동 사무소 (☎ 032-453-5420)

공 략 대 장

연번	일자	주 소	성 명	공람의견	서 명	비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60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7. 06.

<구청장>

단위:명

구별	선거구별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수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계	19세이상주민	등록외국인		
남동구		계	292,057	292,009	48	43,809	
		구월1동	22,326	22,316	10		2,921
		구월2동	9,380	9,380	-		1,407
		구월3동	11,276	11,276	-		1,692
		구월4동	16,779	16,779	-		2,517
		간석1동	21,958	21,950	8		2,921
		간석2동	9,891	9,890	1		1,484
		간석3동	25,763	25,761	2		2,921
		간석4동	21,362	21,358	4		2,921
		만수1동	16,753	16,745	8		2,513
		만수2동	15,973	15,973	-		2,396
		만수3동	16,105	16,101	4		2,416
		만수4동	17,962	17,960	2		2,695
		만수5동	16,658	16,658	-		2,499
		만수6동	22,948	22,942	6		2,921
		장수서창동	7,529	7,528	1		1,130
		남촌도림동	16,840	16,839	1		2,526
		논현고잔동	22,554	22,553	1		2,921

<구의원>

단위:명

구별	선거구별	읍면동별	정구권자 종수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계	19세이상주민	등록외국인		
남동구	가선거구	계	39,105	39,095	10	7,821	
		구월1동	22,326	22,316	10		392
		구월4동	16,779	16,779	-		392
	나선거구	계	50,670	50,668	2	10,134	
		구월3동	11,276	11,276	-		507
		남촌도립동	16,840	16,839	1		507
		논현고잔동	22,554	22,553	1		507
	다선거구	계	62,591	62,578	13	12,519	
		구월2동	9,380	9,380	-		626
		간석1동	21,958	21,950	8		626
		간석2동	9,891	9,890	1		626
		간석4동	21,362	21,358	4		626
	라선거구	계	74,499	74,493	6	14,900	
		간석3동	25,763	25,761	2		745
		만수2동	15,973	15,973	-		745
		만수3동	16,105	16,101	4		745
		만수5동	16,658	16,658	-		745
	마선거구	계	65,192	65,175	17	13,039	
		만수1동	16,753	16,745	8		652
		만수4동	17,962	17,960	2		652
		만수6동	22,948	22,942	6		652
		장수서창동	7,529	7,528	1		652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7 - 34 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림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림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98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6월 2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결정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도림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림동 249번지 일원	155,99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113호 (2000.6.30)	토지구획 정리사업

3.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6) 건축물에 대한 용도·배치·형태·색채·대지내공지·차량및주차·보행동선·단지내시설물배치에 관한 계획: 변경[별표참조]

4. 관계도서 : 붙임(게재생략)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1/1,000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1/1,000

별 표

[별표 1] : 건축물 용도 분류표 (변경없음)

[별표 2] : 건축물 배치 계획 (변경없음)

[별표 3] : 건축물 형태 계획 (변경없음)

[별표 4] : 건축물의 색채 계획 (변경없음)

[별표 5]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별표 6] :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변 경)

[별표 7] :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별표 8] :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변경없음)

[별표 6]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당초)

용 도	도면 번호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공 동 주 택 용 지	A	차량 동선	-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개씩만 허용함으로써 차량 혼잡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 단지내 동선을 Cluster 형식으로 계획하여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되도록 하며, 교차로 측단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외곽도로와 T형 교차를 원칙으로 함
		주차 시설	-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 - 전용면적 기준(85㎡이하 : 1대/85㎡, 85㎡초과 : 1대/70㎡)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권장
근린생활 시설용지	B	차량 동선	대로 3-21호선변 근린생활시설 전면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단, 주유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용도와 이면도로에서 진입이 불가능한 획지는 제외)
		주차 시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준용함.
단 독 및 다세대 주택, 종 교 용 지	C D F	차량 동선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결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 획지 2개소당 1개소의 공동주차통로의 설치를 유도하며 획지 1개소당 최소 3m이상 확보(단, 획지의 분할 및 합병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 선정 가능) -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차 시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준용함.

[별표 6]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변경)

용 도	도면 번호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공 동 주 택 용 지	A	차량 동선	-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개씩만 허용함으로써 차량 혼잡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 단지내 동선을 Cluster 형식으로 계획하여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되도록 하며, 교차로 측단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외곽도로와 T형 교차를 원칙으로 함
		주차 시설	-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 - 전용면적 기준(85㎡이하 : 1대/85㎡, 85㎡초과 : 1대/70㎡)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권장
근린생활 시설용지	B	차량 동선	대로 3-21호선변 근린생활시설 전면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단, 이면도로에서 진입이 불가능한 획지는 제외)
		주차 시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준용함.
단 독 및 다세대 주 택, 중 교 용 지	C D F	차량 동선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결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 획지 2개소당 1개소의 공동주차통로의 설치를 유도하며 획지 1개소당 최소 3m이상 확보(단, 획지의 분할 및 합병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 선정 가능) -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차 시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준용함.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7 - 35 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규정에 따라 변경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7. 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정비사업명 : 장미연립 재건축 정비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 명 : 장미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조합장 유영철
호인에프건설(주) - 대표이사 박도영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138-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81-2번지

3.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38-1번지
- 대지면적 : 1,607.49m²
- 연 면 적 : 5,272.41m²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2층 1개동, 45세대
- 사 업 비 : ₩4,304,604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3. 9. ~ 2008. 02. .

5. 주요 변경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시행기간	2003.09. ~ 2005.12.	2003.09. ~ 2008.02.	공사기간 연장
공동사업주체	(주)염광종합건설	호인에프건설주식회사	
시공사	(주)염광종합건설	호인에프건설주식회사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 2007 - 3 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4.25일 보궐선거에 따른 당선자의 재산등록사항(2007.4.27일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7년 6 월 18 일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소 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 위	구의원	성 명	한중학
(단위 : 천원)							
본인 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 건물 (소계)				47,000			
배우자	아파트	인천 남동구 만수1동 석원아파트 대지 22.00㎡ 건물 60.00㎡		47,000 (10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소계)				0			
배우자	자동차	1995년식 소나타 배기량(1,796cc)		- (5,000)			
▶ 현금 (소계)				70,000			
본인		현금		50,000			
배우자		현금		20,000			
▶ 예금 (소계)				50,000			
본인		농협 2,000, 국민은행 7,000, 새마을금고 10,000, AIG생명보험 700, 대한생명보험 10,000, 정보통신부(우체국) 1,000		30,700			
배우자		국민은행 2,500, 남동신용협동조합 600		3,100			
장남		농협 3,200		3,200			
차남		농협 3,000, 새마을금고 10,000		13,000			
총 계				167,000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 2007 - 4 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 2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정관 제1장 제 5조에 의거 2006년도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대차대조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 공고

대 차 대 조 표

제 4(당)기 :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제 3(전)기 :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단위:원)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296,936,542		265,240,478
(1)당 좌 자 산		296,936,542		265,240,478
(주석2,3)				
1. 현금 및 현금등가물		288,729,796		256,507,772
2. 사 업 미 수 금		-		7,040,000
3. 미 수 수 익		1,931,834		-
4. 선 급 비 용		6,274,912		1,692,706
(2)재 고 자 산		-		-
II. 고 정 자 산		120,254,710		106,142,990
(1)투 자 자 산		-		-
(2)유 형 자 산		120,254,710		106,142,990
(주석2,4)				
1.차 량 운 반 구	62,088,200		59,295,2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6,707,140	25,381,060	24,500,710	34,794,490
2.비 품	157,258,180		108,380,73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2,384,530	94,873,650	37,032,230	71,348,500
3.무 형 자 산		-		-
자 산 총 액		417,191,252		371,383,468
부 채				
I.유 동 부 채		116,075,812		71,008,281
1. 사 업 미 지 급 금		53,260,142		49,579,871
2. 미 지 급 금		6,441,420		-
2. 미 지 급 비 용		38,388,890		11,928,310
3. 예 수 금		17,985,360		9,500,100

계속;

대차대조표 - 계속

(단 위 : 원)

과 목	계 3(당) 기		계 2(전) 기	
	금 액		금 액	
II. 고 정 부 채 (주석2,5)		1,115,440		375,187
1. 퇴 직 급 여 충 당 금	148,014,046		138,690,570	
퇴 직 보 험 예 치 금	146,898,606	1,115,440	138,315,383	375,187
부 채 총 액		117,191,252		71,383,468
자 본				
I. 자 본 금 (주석1)		300,000,000		300,000,000
1. 자 본 금		300,000,000		300,000,000
II. 이 익 잉 여 금		-		-
1. 처분전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0) (전기순이익: 0)		-		-
자 본 총 계		300,000,000		300,000,00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17,191,252		371,383,468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손 익 계 산 서

제 4(당)기 :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 3(전)기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단위:원)

과 목	제 4(당)기		제 3(전)기	
	금 액		금 액	
I. 대 행 사 업 수 입		2,573,486,251		1,543,123,559
1. 대 행 사 업 수 입	2,614,793,000		1,585,982,000	
(정 산 반 환 금)	(41,306,749)		(42,858,441)	
II. 대 행 사 업 비 용		2,573,486,251		1,543,123,559
1. 급 여	328,988,660		295,699,560	
2. 제 수 당	172,051,900		130,214,160	
3. 기 타 직 보 수	495,200,670		375,693,430	
4. 퇴 직 급 여	83,382,326		73,142,531	
5. 복 리 후 생 비	253,035,950		193,251,900	
6. 여 비 교 통 비	11,753,500		8,161,400	
7. 통 신 비	25,340,030		7,147,870	
8. 수 도 광 열 비	213,402,930		124,360,740	
9. 세 금 과 공 과	4,287,880		839,460	
10. 소 모 품 비	73,624,430		32,062,050	
11. 피 복 비	15,635,740		3,399,200	
12. 도 서 인 쇄 비	36,433,510		22,889,360	
13. 지 급 임 차 료	1,188,000		558,800	
14. 수 선 유 지 비	77,153,250		35,714,003	
15. 차 량 유 지 비	11,333,040		9,315,120	
16. 보 험 료	6,844,954		1,352,434	
17. 지 급 수 수 료	69,184,601		7,649,236	

계속;

손익계산서-계속

(단위:원)

과 목	제 4(당)기		제 3(전)기	
	금 액		금 액	
18.접 대 비	8,393,460		8,228,620	
19.교 육 훈 련 비	774,600		1,339,400	
20.재 료 비	189,320,600		110,830,106	
21.행 사 등 잡 비	22,398,830		9,553,139	
22.감 가 상 각 비	37,558,730		29,818,490	
23.연 구 개 발 비	183,254,230		-	
24.위 탁 관 리 비	59,701,830		1,584,000	
25.보 상 비	129,514,720		150,000	
26.포 상 비	21,248,600		22,241,850	
26.기 관 성 과 급	42,479,280		37,926,700	
III.대 행 사 업 이 익		-		-
IV.영 업 외 수 익		-		-
1.이 자 수 익	12,009,554		7,044,125	
(정 산 반 환 금)	(12,009,554)		(7,044,125)	
V.영 업 외 비 용		-		-
VI.경 상 이 익		-		-
VII.특 별 이 익		-		-
VIII.특 별 손 실		-		-
IX.법인세차감전순이익		-		-
X.법 인 세 등		-		-
XI.당 기 순 이 익		-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4(당)기 :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2007년 3월 31일)

제 3(전)기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2006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단위:원)

과 목	제 3(당)기		제 2(전)기	
	금 액		금 액	
I.처분전이익잉여금		-		-
1.전기이월이익잉여금	-		-	
2.전기오류수정 이익	-		-	
3.전기오류수정 손실	-		-	
4.당 기 순 이 익	-		-	
II.이익잉여금처분액		-		-
III.차기이월이익잉여금		-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금운용 계산서

제4(당)기 :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3(전)기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단위:원)

과 목	제 4(당)기	제 3(전)기
I. 자금수입		
1. 사업예산	2,621,833,000	1,578,942,000
차감전사업예산	2,614,793,000	1,585,982,000
사업미수금	-	(7,040,000)
과년도사업미수금	7,040,000	-
2. 자본예산	-	-
3. 비예산	404,900,875	366,085,574
전기이월현금예금	394,823,155	355,863,163
이자수익	12,009,554	7,044,125
미수수익	(1,931,834)	-
과년도미수수익	-	3,178,286
자금수입합계	3,026,733,875	1,945,027,574
II. 자금지출		
1. 사업예산	2,504,725,671	1,220,290,765
차감전사업예산	2,573,486,251	1,543,123,559
감가상각	(37,558,730)	(29,818,490)
퇴직급여	(83,382,326)	(73,142,531)
미지급비용	(38,388,890)	(11,928,310)
과년도 미지급비용	11,928,310	21,931,490
선급비용	6,274,912	1,692,706
과년도 선급비용	(1,692,706)	-
퇴직금지급	74,058,850	12,221,761
2. 자본예산	45,229,030	35,885,900
차감전자본예산	51,670,450	35,885,900
미지급금	(6,441,420)	-
3. 비예산	41,150,772	50,238,334
과년도 사업미지급금	49,579,871	50,669,829
과년도 과다정산액	56,161	322,695

자금운영계산서-계속;

과 목	계 4(당)기	계 3(전)기
당년도 예수금	(17,985,360)	(9,500,100)
과년도 예수금	9,500,100	8,745,910
자금지출합계	2,591,105,473	1,550,204,419
Ⅲ.이월자금		
1.자본금이월	93,889,068	134,973,569
2.퇴직보험예치금	146,898,606	138,315,383
3.차기이월미지급금	194,840,728	121,534,203
이월자금합계	435,628,402	394,823,155
Ⅳ.차기예산재원자금	-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